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40
----------	------

발의년월일 : 2019. 10 .
 발 의 의 원 : 김원규 의원
 김대현 의원
 김태원 의원
 박갑상 의원
 박우근 의원
 송영현 의원
 이시복 의원
 홍인표 의원

1. 제안이유

- 가. 전시·국제회의시설 설치가능 지역 확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경미한 변경범위 규정 등 조례에 위임된 도시계획 분야 규제 완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나. 건축가능 용도에서 법령 위임사항 반영 등을 위해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규정(안 제10조 전부개정)
 - 「도시계획시설 기준 규칙」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중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민편의 증진
- 나. 문화시설(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설치가능 지역 확대(안 제16조의2 신설)
 -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설치가능 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과 함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주거지

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하여 전시·국제회의시설의 원활한 공급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다.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가능한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주거지역 내 성인오락실 등 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설치를 불허하도록 규정('07.01.19 신설)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용도지역 내 건축가능한 건축물에서 관련 조문 정비

라.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에 건축가능한 수련시설을 야영장 시설과 별도로 분리(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8조, 제50조, 제71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수련시설과 야영장시설을 다른 건축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용도지역 내 건축가능한 건축물에서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붙임1 참조)

나. 관계 법령(붙임2 참조)

다.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세부시설 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의 변경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한정한다)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제4호 중 “동호나목 및 다목 2)”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34조제3항제3호 중 “동호나목 및 다목 2)”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35조제3호 중 “동호나목 및 다목 2)”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48조제7호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50조제6호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71조제9호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u><신 설></u></p> <p>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2항으로 이동></p> <p><신 설></p> <p>제33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 	<p>제10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세부시설 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의 변경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한정한다)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p>제16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p> <p>제33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

현 행	개 정 안
<p>매시설 중 <u>동호나목 및 다목2</u>)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 (이하 생략)</p> <p>5. ~ 6. (생 략)</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u>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 한다</u>)</p> <p>8. ~ 14. (생 략)</p> <p><u><신 설></u></p> <p>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① ~② (생 략)</p> <p>③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u>동호나목 및 다목2</u>)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 (이하 생략)</p> <p>4. ~ 5. (생 략)</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u>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u></p>	<p>-----<u>같은 호 나목 및 다목</u>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p> <p>5. ~ 6. (현행과 같음)</p> <p>7. ----- -----<u>유스호스텔</u>----- ----- ----- -----</p> <p>8. ~ 14. (현행과 같음)</p> <p>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u>야영장 시설</u></p> <p>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같은 호 나목 및 다목</u>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p> <p>4. ~ 5. (현행과 같음)</p> <p>6. ----- -----<u>유스호스텔</u>-----</p>

현 행	개 정 안
<p>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 ----- ----- ----</p>
<p>7. ~ 15. (생략) <신설></p>	<p>7.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p>
<p>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야영장 시설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 ~ 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p>	<p>1. ~ 2. (현행과 같음) 3. -----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p>
<p>----- (이하 생략)</p>	<p>-----</p>
<p>4. ~ 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4. ~ 5. (현행과 같음) 6. ----- -----유스호스텔----- ----- ----- -----</p>
<p>7. ~ 15. (생략) <신설></p>	<p>7.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p>
<p>제48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야영장 시설 제48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 ~ 6. (생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p>	<p>1. ~ 6. (현행과 같음) 7. ----- 수련시설-----</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시설을 포함한다)</u></p> <p>8. ~ 15. (생 략)</p> <p><u><신 설></u></p> <p>제50조(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 ~ 5. (생 략)</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u></p> <p>7. ~ 13. (생 략)</p> <p><u><신 설></u></p> <p>제71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 ~ 8. (생 략)</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u></p> <p>10. ~ 13. (생 략)</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p> <p>8. ~ 15. (현행과 같음)</p> <p>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u>야영장 시설</u></p> <p>제50조(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수련시설</u>----- -----</p> <p>7. ~ 13. (현행과 같음)</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u>야영장 시설</u></p> <p>제71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u>수련시설</u>----- -----</p> <p>10. ~ 13. (현행과 같음)</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u>야영장 시설</u></p>

(붙임2)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용적률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표4]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동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

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주거지역 내 게임제공업시설 위임내용	
구 분	내 용
전용주거지역	시행령에서 불허
일반주거지역	시행령에서 조례로 허용(일반게임제공업시설 제외)
준주거지역	시행령에서 허용(일반게임제공업시설 제외)

[별표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21]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

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체육시설(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7. 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3.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할 것

가.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가능한 한 함께 설치할 것

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에 모였다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라.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소음 등으로 인하여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외곽경계부분에 녹지·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두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마. 장래의 수요 증가 및 다른 기능과의 연계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7. 판매시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수련시설 및 야영장시설

· 수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야영장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의 시설 종류	
구 분	내 용
게임제공업의 시설	특정 장소에서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전체이용가 게임물
-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전체이용가 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컴퓨터를 통한 게임물 및 정보제공물 제공 영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 1. 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